

환영받지 못하는 천국의 시민:

미국 내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의 체험된 경험으로서의
‘불법성’

강윤희*

9/11 이후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더욱 힘들어 졌다. 일자리를 찾거나, 병원에 가는 것, 복잡한 이민법, 영어를 배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늘 마주치는 도전들이다. 이들은 이미 천국의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도 환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베니(뉴시터 인도네시아 교회 주임 목사)

1. 들어가는 말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던 지난 10년간 미등록¹⁾ 이주민의 급증은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몰리는 선진국에서의 잠정적 사회적 ‘위기’(De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조교수

1) 이 논문에서는 ‘불법 체류자’, ‘불법 이주민’, ‘불법 외국인 노동자’라는 부정적 함의를 가진 용어 대신에,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김민정 2011; 한건수 2003 참조).

Genova 2002; Baldwin-Edwards 2008)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미등록 외국인인 2007년에 들어 그 최대 규모인 1180만 명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연간 약 47만 명 정도씩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Hoeffler, Rityna, and Baker 2008). 이러한 배경 하에 비정규적 이주를 다루는 많은 학문적 논의가 있어왔지만, 대다수의 미국 내 연구는 미등록 이주민의 급증을 야기 시키는 경제적, 구조적 요소와 그 해결책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Baldwin-Edwards 2008 참조).

이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한국 내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류학적 논의는 199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노고운 2001; 유명기 1997, 1999, 2002; 이선화 2006; 이옥정 1994; 이현정 2001; 한건수 2003; 함한희 1995). 1990년대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노동자는 비교적 동질적이었던 한국 사회에 인종적, 문화적, 계층적 ‘타자’로 인식되고 재현되면서 이들의 소수자로서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를 이끌어 냈다(한건수 2003; 함한희 1995; 이선화 2006 참조). 특히, 유명기(1997)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양식이 ‘유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72),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양식을 규정하는 구조적 요건과 함께 사회문화적 조건, 특히 ‘불법 신드롬’(75-78)이라고 명명되는, 한국사회에서 이들 노동자들을 ‘불법화’시키는 각종 문화적 장치를 살펴 볼 것을 주장한다. 이처럼 한국 내 기존의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 특히 미등록 노동자들의 존재양식은 한국사회의 지배적 담론에 따라 관념적으로 상상되고 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데에 일찌감치 주목하고 있다(유명기 1997, 2002 참조).

또 한 가지 특기 할 사항은, 2000년대 초반의 한국 내 선행 연구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논의에 포함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한국 내의 외국인 노동자 중 미등록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한건수 2003: 161-164 참조). 따라서, ‘미등록’ 또는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한국 내의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도 미등록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독특한 생활세계 경험과 정체성 형성 과정을 논의하는 논문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현미(2008)는 방문취업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중 동포들의 생활 경험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그 중 미등록 노동자였다가 다시 합법적 절차로 재입국한 재중 동포들의 생활 경험의 변화를 논의하였고, 김민정(2011)은 한국 내 필리핀 미등록 여성 노동자의 사례를 통하여 이들의 불법성이 오히려 이동의 자유를 주는 역설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 또한 정성신(2012)은 한국내의 미등록 이주민들이 ‘미디어 활동가’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역동적 과정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반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상이한 차원의 사회적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한국 내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의 연장선 상에서, 이 논문은 미국 내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이 체험하는 ‘불법성’²⁾을 분석한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불법성’의 개념은 단순히 법적 체류 자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윌런(Willen 2007: 11)에 따르면, ‘불법성’은 세 가지 측면, 즉 “첫째, 법적 자격의 한 가지 형태로서, 둘째 사회 정치적 조건으로, 셋째, 특정한 ‘세계 내 존재’ 양식을 생성하는 것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논문에서는 ‘불법성’을 미등록 이주

2) 최근의 미국 내 법인류학적 연구에서는, ‘불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진 담론적 효과, 즉, ‘불법’이라는 용어의 사용만으로도 미등록 노동자들의 범법자화를 당연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들어, ‘불법성’(illegality)이라는 용어는 언제나 인용부호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De Genova 2002, 2004; Khosravi 2010 참조).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성’은 언제나 인용부호와 함께 사용하기로 하겠다.

자의 불법적인 체류자격과 사회적 조건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관적, 감각적 경험 세계, 즉 ‘세계내 존재’의 한 양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루기로 한다. 실제로 많은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은 자신의 체류 신분의 불법 여부를 떠나, 불법 체류자로 분류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법적 자격으로서의 ‘불법성’과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을 구분하고, 후자의 측면, 즉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이 체험하는 신체적, 감각적, 일상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다.

이러한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이후 국외의 법인류학적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우선 법률상의 개념이 아닌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불법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드 제노바(De Genova 2002, 2004)는 미국 내 멕시코 출신 미등록 노동자의 연구에서, ‘불법성’이란 단순히 체류국가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지칭하는 법률 상의 범주일 뿐만 아니라, “추방가능성의 경험”과 같이 “특별히 ‘공간적’으로 경험되는 사회, 정치적 조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e Genova 2004: 161). 이와 유사하게 커틴(Coutin 2005: 196)은 미등록 이주민들의 ‘불법성’은, “숨겨져 있으나 알려진 사회적 실체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은밀함”이 이들 생활세계의 주된 성격이라고 지적한다.

보다 최근에는 신체적 감각적으로 체험되는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을 다루는 현상학적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필리핀과 아프리카 출신 미등록 노동자를 연구한 윌런(Willen 2007)은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의 결여가 이들이 겪는 특유한 경험세계에서의 어려움을 자동적으로 야기 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의 ‘불법성’은 그들의 직접적이고 체화된 경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미등록 이주민의 ‘불법성’은 단순히 “이주민들의 생활과 생활세계의 외부적인 구조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내부적 차원’, 즉, 이

들 자신의 신체, 시간, 공간 등의 주관적이고 체화된 경험에까지 다다른 것이다”(Willen 2007: 16). 마찬가지로, 코스라비(Khosravi 2010)는 스웨덴의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의 일상, 그리고 체화된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은 “빈번한 이주, 이직, 구류/감금, 그리고 추방 가능성”(Khosravi 2010: 96)에 따른 “불안감과 공포” 등으로 경험됨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미국 동부의 한 도시인 뉴시티³⁾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이 주관적,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불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신체적, 공간적, 시간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또한 미국사회의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타자화’와 ‘범법자화’라는 지배 담론에 대한 대응 기제로서의 종교에 주목하여,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의 신앙과 종교적 담론이 어떻게 이들에게 대안적인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상징적 자원을 마련해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두 명의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이 제공한 신앙 간증을 분석하여, 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되는 ‘불법성’이 어떻게 조직되고 표현되며 어떻게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 받는지 설명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뉴시티의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의 사례를 통하여 이들의 공간적, 시간적, 감각적인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거시적인 차원에서 창출되는 이들 이주민들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이 어떻게 미시적인 차원의 생활 세계와 교차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Levitt and Jaworsky 2007 참조).

이 논문의 주된 경험적 자료는 연구자가 미국 동부의 뉴시티에서 2006년 9월에서 2007년 5월 사이에 약 9개월간 수행하였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수집되었다. 연구자가 만났던 대다수의 제보자들은 조사 당시

3) 본 연구에 참여한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 인용되는 도시명과 제보자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밝힌다.

망명 신청 중이었으므로, 이 논문의 대상이 되는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은 망명 신청자와 같이 자신의 체류신분을 합법화하려는 과정 중에 있는 이주민까지 포함한다. 특히 조사 기간 중에는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의 위협이 한층 더 증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포를 형성한 제보자라고 할지라도 선불리 자신의 체류 자격과 경험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언급하려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므로, 조사 기간 중 총 6명의 제보자들만을 면담할 수 있었다. 면담을 통해서 이들의 이주과정과 정착과정을 주된 주제로 하여, 특히 이들이 불법 신분에서 따라서 겪는 고충과 구속의 경험, 그리고 체류신분을 합법화하려는 노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출신 고등학생 12명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 대다수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이었으므로, 이들을 통하여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그 밖의 민족지적 자료들은 교회나 성당을 중심으로 한 각종 종교 행사와 무료 법률 상담 워크숍 등의 지역 행사에서의 참여 관찰, 인도네시아 상점, 음식점 등에서 만난 제보자들과의 비공식적 면담 등을 통해 수집 되었다. 또한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두 가지의 신앙 간증 내러티브는, 연구자가 인도네시아 천주교 공동체 내의 성령기도모임에 참여하여 기록한 것이다. 면담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었으며, 간혹 영어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 영어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이후 인도네시아 출신 조교들의 도움으로 전사되고, 이후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2. 뉴시티의 인도네시아 이주민: 민족지적 배경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은 1997년 이후, 미국 동부지역으로 이주해

은 인도네시아인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의 주된 원인은 당시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을 피해 ‘기회의 나라’인 미국으로 많은 수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Setiyawan 2005 참조). 공식적인 통계는 찾아볼 수 없지만, 뉴시티의 자체적인 통계에 의하면 2007년 현지조사 당시 약 5천에서 6천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뉴시티의 남쪽지역에 밀집해 살고 있었다.⁴⁾ 이들 이주민의 대다수는 중국계로서 주된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보다 나은 취업기회와 경제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노동이주인 것으로 보고되었다.⁵⁾ 이들은 보통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미국 내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⁶⁾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 한 명씩, 또는 부부가 먼저 이주해 온 후, 자녀들을 한 명씩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인도네시아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해온 배경으로는 첫째, 인도네시아의 통화인 루피아(Rupiah)의 약세와 미국달러의 강세를 들 수 있고, 둘째,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미국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시티 내의 청소업체라든가 음식점들, 또한 근교의 많은 공장과 대형 창고 등에서는 오

4) 이러한 통계는 뉴시티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단체들이 비공식적으로 산출해 낸 통계와 그것을 소개한 책자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책자의 제목과 출판사의 주소를 통해서 연구대상이 되는 도시의 실명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참고문헌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밝힌다.

5) 각주 4 참조.

6) 물론 이 수치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지닌 이민자들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규모 자영업, 예를 들어 카페나 식당, 식료품 가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목회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미등록이었다가 망명신청 등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전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지만 당시 불법 체류자와 합법적 체류자들의 정확한 비율에 대한 통계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단지 뉴시티 내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대다수가 미등록 이주민들이라는 보고만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뉴시티의 “웰커밍 센터”(Welcoming Center)라는 단체에서 발행한 책자에서 발견할 수 있었지만, 위의 각주 4와 같은 이유로 참고문헌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밝힌다.

히려 미등록 노동자들을 고용하려는 수요가 많았는데, 이는 미등록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당시 최저 임금인 시간당 미화 6불에서 7불 사이) 때문이다. 많은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이 “미국에서는 돈을 찾기가 쉽다”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쉽게 일자리를 찾고, 또 쉽게 일터를 바꿀 수 있다. 이러한 미등록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주들은 이들에게 별도의 혜택(예를 들어, 건강보험이나 퇴직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장시간의 노동착취가 가능해 진다. 이주 노동자들은 뉴시티 내에서 무허가로 운영되는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이주민들 중 비교적 영어 사용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 알선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직업소개소에서는 밴이나 승용차의 운전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많은 수의 이주민들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해 왔지만, 이들은 종종 정치적 이유를 이주의 주된 목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대부분 중국인이며 기독교인인 뉴시티의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은 자신의 이주를 자유를 향한 도피로 정당화하곤 한다.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은 경제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다수인 토착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로서 많은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수하르토 정권 하의 강력한 동화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어 교육은 전면 금지 되어왔으므로, 노년의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을 제외하고는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Freedman 2003참조). 또한 1997년의 경제적 위기 이후 1998년에는 30년 이상의 장기 집권을 하던 수하르토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대규모의 폭동이 일어나는 등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는데,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많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은 집단적으로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Purdey 2006 참조). 결과적으로 이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은 인접 국가나 미국으로 이주해 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이유로 자신들의 이주를 “강제적 이주”로 정당화하기도 한다. 뉴시티에서 인도네시

아인들의 망명 신청을 주로 맡아서 해 오던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테러와 싸운다고 얘기하면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로 중국계 기독교인들을 강제 추방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망명 신청자들은 본국에 돌아 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이며, 자신은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조사 당시 만난 인도네시아인들 중에는 망명을 신청 중에 있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중국계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에게는 망명 신청이 유일하게 자신의 체류를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다.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에게 구속되어 감금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망명을 신청한다면 이들에게 임시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에서 온 아구스는 통근 배를 타고 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구속되어 두 달 동안 감금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때 이민국 직원들은 아구스에게 망명 신청이 유일하게 강제 출국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제안하였다. 아구스는 이러한 제안에 따라 망명을 신청하고 두 달 만에 출감할 수 있었으며, 조사 당시 망명 신청을 완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처럼 망명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망명 신청의 방법으로 자신의 미국 내 체류를 연장하려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망명 신청자들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미국에서의 체류와 취업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자신이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박해와 어려움, 또한 귀국의 공포 등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망명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뉴시티의 한 세탁소에서 일을 하던 40대의 헨니는 조사 당시 망명 신청 재심 중이었다. 망명 신청의 이유로 헨니는 자카르타에 있던 자신의 집이 이웃의 다른 토착 인도네시아인에 의해 방화되었던 경험으로 인한 심번 불안감을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망명 신청이

받아지려면, 증거 제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헨니의 경우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었다.

미국 정부에서는 증거를 보이라고 한다. 제일 좋은 건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처나, 병원 기록, 아니면 사진이 있어야 한다. 내가 자카르타에 살 때 내 집이 불탔다. 그렇지만 사진은 없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불타고 있는 자기 집의 사진을 찍는단 말인가?

이처럼 불충분한 자료 때문에 헨니는 첫 번째 망명신청에서 거절당하여 재심을 요청한 상태였다. 그의 비자는 벌써 만료되었지만, 망명신청과 심사 중에는 체류가 허용되므로, 헨니는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미국 체류를 연장하고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망명 신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뉴시티의 이민자들을 위한 NGO 단체에서 일하는 한 직원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신청된 약 200건의 망명 신청 중에서 오직 두 가지 케이스만이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의 상황이 충분히 안정되고 좋아졌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 때문이었다.

위의 경우처럼 망명을 신청한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을 제외하고 많은 수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서 체류하며 노동 허가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정식 취업을 통해 취업 비자를 받거나, 미국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미등록 노동자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 때문에 대부분 최저 임금의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생활비와 고향의 가족에게 송금할 돈을 벌기 위해 잦은 교대와 장시간의 근무를 해야만 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작은 아파트에 다수의 노동자가 함께 모여 살기도 하고, 가족이 함께 온 경우에는 부부가 교대로 일을 하거나 밤 근무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심지어

어 미성년자인 어린 학생들도 주말과 밤 시간을 이용하여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조사 당시 17세 안톤의 경우 주말이나 밤 시간을 이용해서 근처 일식집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 당 2.5달러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또 다른 고등학생인 알렉의 경우 자신의 할머니는 알렉과 형제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는 밤 시간을 이용하여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얘기했다. 이런 밤 근무에서 당시 이들은 낮 근무보다는 조금 높은 임금인 시간당 8.25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 이처럼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한 근로 조건은 뉴시티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체류국의 지배담론에서 외국인 특히 미등록 외국인은 끊임없이 타자화, 범법자화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된다(이선화 2006; 한건수 2003; Willen 2007 참조).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인종적, 계급적 타자로 타자화 되거나 ‘위험’한 존재로 끊임없이 범법자화 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미지는 체류국의 원주민에게 실제의 생활 경험을 통하여 재생산, 재강화 되거나 수정되기도 한다(이선화 2006). 특히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사건 이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욱 범법자화 되어, 이민법의 영역은 국가 안전의 문제로, 인종주의는 심지어 애국심의 한 표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몇몇 학자들은 지적하였다(Coleman 2007; Winders 2007).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단순한 국경 지대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국경—그리고 국경의 강화—의 문제”(Coleman 2007: 64)가 되었다. 연구 당시 뉴시티에서도 ‘국가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에 의한 불시 검문과 단속으로 많은 미등록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체포되어 추방당하였으며, 한 햄버거 가게에서는 “주문 시에는 영어만 사용하십시오”라는 팻말을 붙여 놓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의 거주 지역 근처에서 작은 상점을 경영하고 있던

한 이탈리아계 미국인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다음과 같이 ‘도둑’으로 또는 ‘9/11 테러의 공모자’로 범법자화 하고 있었다.

주위를 봐라. 아침 출근 시간이면, 근처의 일터로 불법 노동자를 옮기는 밴이 얼마나 많은지. 미니 밴에는 8명! 큰 밴에는 16명! 다 불법 체류자다. 이 사람들은 우리 미국인들의 일터를 빼앗는 도둑들이다. 9/11테러를 계획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도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미국 내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구속하고 강제 추방하는 것, 이것이 이민국이나 경찰이 해야 할 본분이다.

이러한 미국사회의 부정적 태도와 시선은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고립시켰다. 이들은 스스로를 “어둠의 이민자”(immigran gelap)라고 부르며, 체류 자격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묻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뉴시티에서 벌써 6년째 살고 있다는 하리는 “우리는 서로에게조차 체류자격을 묻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에게 체류자격에 대한 질문이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 강조하였다. 또한 원주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범법자’로서의 이미지는 오히려 미등록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범법자로 분류될지도 모르는 모든 가능한 위협을 배제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게 만들기도 한다(De Genova 2002). 따라서 미등록 이주민들은 무임승차나 불법주차, 심지어 무단횡단도 하지 않는 “티끌 하나 없는 모범적 시민”(Khosravi 2010: 99)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미등록 노동자들 스스로가 체류국가에 유연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유용한 일꾼으로 인식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Hiemstra 2010). 이처럼 끊임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자화’ 또는 ‘범법자화’ 되는 일상 속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은 이들만의 독특한 생활 세계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채택하기도 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일상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을 신체적, 공간적, 시간적 경

험으로 보다 세분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3. 일상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 신체적, 공간적, 시간적인 경험

1) 신체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 인종적 타자화와 건강의 문제

많은 이주민들이 첫 번째로 지적하는 '불법성'의 일상적 경험은 자신들의 신체적인 경험을 통해서이다. 예를 들어 체류국의 타자화와 범법자화는 주로 외국인 이주민들의 가시적인 상이함, 즉 인종적 차이점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Coutin 2005; De Genova 2005). 이러한 인종적 타자화는 9/11 사건 이후 강화된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결합하면서,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이민국에서 지역 경찰로 또는 연방 공무원으로, 이후 시민들 개개인에게로”(De Genova 2002: 426)로 옮겨져 왔다. 앞서 언급했던 아구스의 경우 “마치 이마에 ‘불법 체류자’라고 쓰여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얼굴 색깔이 다른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고, 사람들이 쳐다보면 겁이 난다. 그래서 주로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진술한다. 이들의 서투른 영어도 이들이 자신의 ‘불법성’ 또는 타자성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⁷⁾ 한국에서 연수생 생활을 했다는 제법 한국말이 유창했던 아디는 동 인도네시아 출신으로, 다른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에 비해 유난히 피부색깔이 검고, 머리가 곱슬거렸다. 아디는 자신의 외모가 흑인과 비슷하여 종종 미국 흑인으로 “지나쳐 질 수” 있지만, “말만 걸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붙는다며 웃었다. 유창한 한국말에 비해서 “영어는 통 늘지 않는다”

7) 물론 이러한 경험은 이주민들, 특히 유색인종 이주민들의 경우 합법적인 체류자격일 지라도 이민 초기에 겪는 타자성의 경험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며, 이 논문에서 보고되는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타자성의 경험이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고 말하면서, 자신의 서투른 영어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것이 들롱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인들과 다른 얼굴색이나, 서툰 영어는 이들 이주민들을 즉각적으로 타자화시키며, 자신의 ‘불법성’을 신체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또한 달라진 사회, 자연 환경도 이들의 독특한 신체적 경험을 형성하게 만든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이들은 자신들의 체류 자격 때문에 대부분 비숙련 단순 노동을 필요로 하는 공장이나 창고에서 장시간의 노동과 밤 근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시달려야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시간이 좋았고, 미국에서는 돈이 좋다”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는 가난하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했다면 미국에서의 삶은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일만을 하는 고된 생활인 것이다. 특히 미국 동부의 북부에 위치한 뉴시티는 적도에 위치한 열대지방의 인도네시아와는 상이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의 변화도 이들 이주민들로 하여금 상이한 신체 경험을 하게 한다. 다음은 종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30대 초반 남성인 디디의 신체적 경험과 건강에 대한 언급이다.

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일을 오래 해본 적이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똑같은 작업만을 하고 있다. 어깨와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침마다 자무(jamu: 인도네시아의 전통 약제 또는 자양 강장제)를 마시고, 종종 안마를 받지만, 모든 근육이 뭉쳐 있는 것 같다. 또 겨울은 정말 길다. 겨울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겨울은 정말 춥다. 겨울이면 온 몸이 굳어 버리는 것 같다.

최근의 많은 연구자들은 외국인 미등록 노동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으로서의 ‘불법성’이 어떻게 신체적 취약성, 즉 건강이나 의료의 문제로 연결되는지 주목하고 있다(Willen 2012; Quesada 2012 참조).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의 상황이거나 또는 이들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정책을 수립하였다(Chavez 2012 참조). 인도네시아 미등록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길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애플 수도 없는” 상태이다. 의료 보험 없이는 고가의 의료비를 지불할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조건만을 보더라도 이들에게 의료기관과 의료 서비스의 이용은 극히 힘든 상황이 된다. 또한 비용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언어 장벽이나 신분 노출에의 두려움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미등록 이주민들의 미국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Chavez 2012 참조).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 때문에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은 자신들 고유의 전통적 치료 방식에 의존하곤 했다. 실제로 많은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은 아침마다 자무를 마시고, 인도네시아 안마사(tukang pijit)에게 정기적으로 마사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뉴시티 인도네시아 식료품 가게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자무들이었다. 또한 무료로 배포되는 지역 신문의 광고란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전통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마사의 광고가 상당히 많았다. 칩용이라고 불리우는 60대 인도네시아 여성 안마사는 자신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장기간의 노동과 추운 날씨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손님의 몸 왼쪽에서부터 안마를 시작한다. 거기 심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발부터 시작한다. 심장에서 가장 먼 발에 더러운 피가 몰려 있기 마련이거든”이라고 덧붙였다. 칩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대부분 장기간 같은 자세로 반복적인 일을 하는 단순 작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들의 몸에는 “급격히 더러운 피가 쌓이고 흘러가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칩용은 인도네시아에 직접 가져온 전통 안마

오일을 사용하여 고객의 “혈액 순환을 돕고, 몸을 이전의 상태로 돌려준다”고 자랑스럽게 덧붙였다.

2) 공간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 위험한 공간 대 안전한 공간

이러한 신체적 경험 이외에,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의 존재 양식의 하나로서의 ‘불법성’은 자신의 생활 세계를 상이한 두 가지의 공간—위험과 안전의 공간으로 인지하게 한다.⁸⁾ 여기서 위험한 공간은 모든 관공서, 거리, 대중교통 수단 등의 공공장소를 포함하며, 이러한 공공장소에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대면을 피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앞서 설명했던 아구스와 같이 모자를 눌러 쓰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방법이나, 아디처럼 자신의 서투른 영어를 들리지 않기 위해서 설블리 말을 하지 않는 행동 등이 이러한 회피 전략 중 대표적인 것이다. 한편 대중교통 수단도 이들이 꺼리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는 직업소개소에서 통근 배를 사용해서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도와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직업소개소의 통근 배는 노동자 개개인의 집에서 작업장까지의 이동을 도와줌으로서, 이들의 공공장소, 특히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험한’ 공간 이외에도 연구 당시 점차 고조되는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경계 강화와 단속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체류 자격을 묻는 ‘권위적인 타자’와의 대면의 가능성은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전한 공간에 속했던 여러 일상적인 공간 들이 점점

8) 다른 사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간적 경험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내의 미등록 이주민들의 경우 이들의 생활 범위는 작업장과 집으로 한정되어 있으며(정성신 2012: 62), 이스라엘의 연구 사례에서도 미등록 노동자들의 생활영역이 ‘체류사회’와 ‘집’의 공간으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Willen 2007 참조).

줄어들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수단을 피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통근 밴도 더 이상 안전한 이동 수단은 아니었다. 앞서 살펴봤던 아구스는 자신이 구속되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밴을 타고 일터로 가던 중이었다. 경찰이 차를 세웠다. 그러더니 운전사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모두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아무도 신분증을 보여 주지 못하자, 경찰은 “이제 큰일 났군”이라고 빈정거리며 우리를 데리고 갔다. 우리 차가 정지 표지에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를 세운 것이지만, 우린 분명히 [정지 표지에서] 섰었다. 경찰은 우리를 잡을 구실을 찾는 것 같았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은 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게 느껴졌던 공간에 대한 침입 가능성에서 더욱 극대화된다. 그것은 이들 미등록 이주민들의 ‘집’이다. 비록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은 낙후된 아파트에서 그것도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있는 처지였으나 그래도 이들의 집은 낯선 이국의 땅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집도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은 아니었다. 뉴시티의 강화된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규제에 따라서 이들의 집은 외부에서 침입 가능한 위협의 공간이 되곤 했다. 40대의 여성 라니는 한 밤 중에 들이닥친 이민국 경찰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때가 밤 9시였다. 내 아이 중에 작은 애는 자고 있었고, 큰 애는 아직 거기 있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나는 문을 열어야만 했다. 그러자 바로 4명이 들어왔다. 마침 어머니도 계셨는데, 위층에서 보곤 손전등을 비추자 당장 내려오라고 했다. 그 사람은 이것저것 물었다. 내가 누구를 찾느냐고 묻자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다.

라니의 가족은 당시 망명 신청의 재심까지 거절당하고, 강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둘째 아이의 건강 문제로 임시체류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임시체류허

가를 받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갑작스러운 단속은 이들 가족에게 두려움으로 경험되었다. 라니가 전해주는 급박한 상황은 첫째 시간적 배경이 밤 9시라는 점, 둘째 공간적으로는 라니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명확히 전달된다. 자고 있는 아이들과 늙은 어머니에 대한 묘사나 “문을 열어아만 했다”(terpaksa saya buka)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라니가 이민국 경찰이라고 언급한 4명은 힘없는 라니의 가족에게 명령을 내리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들은 방문의 목적을 밝히지도 않고, 라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 즉 이들은 라니의 사적인 공간이자 휴식의 공간인 집까지 침입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집이라는 공간도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나타난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들 미등록 이주민들의 ‘불법성’ 경험이 증폭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우호적인 공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식료품점이나 음식점, 미장원, 빨래방⁹⁾ 등과 같이 근처의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이나,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의 공간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조사 당시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던 구역에는 각 거리의 코너 마다 인도네시아 상점이 있었다. 이러한 상점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각종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구할 수 있었고, 이미 조리된 인도네시아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하기 위한 각종 선불 국제 전화 카드를 판매하거나, 인도네시아로의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긴 노동에 지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가게는 휴식의 공간이기도 했다. 40대 여성 인다는 이러한 인도네시아 상점들이나 근처의 빨래방에서

9) 미국 내 ‘빨래방’(Laundromat)은 동전을 넣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미국 내 각 가정집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마련되어 있지만, 뉴시티의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이러한 세탁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정기적으로 빨래방에서 세탁을 해야 했다.

이주민들끼리 서로 안부를 주고받거나,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작은 상점이나 빨래방은 인도네시아의 마을마다 존재하던 작은 잡화 가게인 와룽(warung)이나 사람들이 모여 잡담을 나누고 휴식을 나누던 마을의 길가(pinggir jalan)와 같은 친목의 공간을 타국의 땅에서 그대로 재현한 셈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교회나 성당도 안전한 장소로 경험되었다. 특히 이러한 교회의 연계를 통해 만난 미국인들은 이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의 개신교 교회 중 하나인 뉴시티 찬양 교회는 메노나이트파(Mennonite) 교회로서 미국의 다른 메노나이트파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 이런 미국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뉴시티 찬양 교회에서는 항상 무료 법률 상담이나 의료상담 또는 무료 영어 강좌들을 제공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었다. 즉 외부인들, 특히 미국인들과 인도네시아인들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에서 만난 외부인들에게는 자신이 이방인임을 굳이 감출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 신도의 존재는 교회 공동체의 다문화적 다인종적인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환영받곤 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들 교회나 성당이 종교적인 색채를 벗고, 종교가 다르더라도 인도네시아 이주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인도네시아 주민 센터의 기능과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4월에는 뉴시티 인근에 주재해 있는 주미 인도네시아 영사관에서 뉴시티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을 방문하여 여권 연장과 갱신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데, 이 행사도 인도네시아 성당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당시 약 100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행사는 여권 연장 및 재발급 서비스뿐만 아니라, 영사관 직원과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되었고, 행사가

끝난 후 영사관 측에서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참석인원의 대다수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었지만, 무슬림의 복장을 한 사람들도 꽤 많았다. 따라서 영사와 부영사가 차례로 연설을 하던 단상 앞에 걸린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이 장소가 성당이며 종교적 공간이라는 사실을 찾아보기는 극히 힘들었다. 또한 매년 인도네시아의 독립 기념일인 8월 17일이면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이 종교를 막론하고 함께 모여 각종 게임과 노래, 음식을 즐기며 고국의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던 장소도 바로 성당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서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은 더 이상 구속이나 강제 추방을 두려워하는 ‘어둠의 이민자’가 아니며, 자신의 다른 피부색이나 서투른 영어를 불안해하는 이방인이 아닌 것이다.

3) 시간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 시간적 경계와 통제

한편, 또 다른 ‘불법성’ 경험의 중요한 차원으로는 시간적인 경험 들 수 있다. 다른 미등록 노동자들의 연구에서도 빈번히 보고되듯이 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문제는 일상적 경험의 ‘불법성’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소재 중 하나이다(De Genova 2005; Hiemstra 2010; Khosravi 2010; Willen 2007 참조). 특히 이러한 신분증과 면허증의 문제는 이들의 시간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 경험을 잘 나타내 준다.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 경험을 천주교도들의 신령기도회 중에 기록한 신앙 간증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당시 50대 후반의 데이비드가 자신이 면허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다른 신도들에게 이야기 하는 도입 부분이다.

에헴...제 미국에서의 체류자격은 마치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문제가 제 아이디(ID) 이게 이번 12월 22일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마음을 굳게 먹기를 ‘운전면허(SIM)

를 따라왔다.’

위의 경우 데이비드는 엄밀한 의미에서 미등록 노동자는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자 연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현재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려고 마음먹는다. 미국 사회에서 면허증은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만료되는 신분증을 면허증으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몇 번의 시도 끝에 데이비드는 면허 필기시험에 간신히 합격하게 된다. 하지만,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면허 관리소의 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했는데, 이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신분증을 가진 데이비드는 직원과의 대면이 극도로 두려웠다.

그리고 나서 그 직원을 마주해야 했을 때, 나는 떨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어찌겠어. 강해지자. 앞으로 가자.” 이렇게요. 확신이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주었어요. (직원이 말하길) “당신, 여기 체류자격이 뭐요?” 그래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줬는데, 그 번호 밑에 써 있기를 ‘당신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직원도 그걸 읽었기를 바랬죠. “하지만, 이건 벌써 오래된 거잖아요.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최근의 것을 보여 주세요.” 그래서 생각했죠. “무슨 최근의 것?” 매달려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그런데 제 주머니에 이민국에서 온 편지가 아직 있었어요. 그때 제 문제가 있을 때 취업연장 문제로 이민국에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로 담당자가 말하기를 60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편지를 보내기를 “나중에 60일 안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많은 미등록 이주민들이나 또는 자신의 체류를 합법화 하려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지속적인 ‘기다림’ 또는 ‘정지’의 상태로 표현하곤 한다. 데이비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체류자격을 “매달려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라고 형상화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시간적 ‘정지’의 상태로 표현한다. 이민국에서 말

하는 “60일”이라는 시간도 데이비드에게는 ‘정지’와 ‘기다림’의 경계가 된다. 즉 이주민들에게 체류국가의 이민법은 이들의 공간적 이동의 통제뿐만 아니라, 시간적 통제를 통해서도 경험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의 ‘불법성’ 또는 ‘불법 가능성’은 ‘공간적’으로만 경계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많은 ‘시간적 경계’로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불법성’의 경험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의 데이비드의 간증에서 데이비드는 면허증을 따야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I.D.)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예를 들어 갑자기 검문을 한다든지 어찌든지 하면 우리는 (신분증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즉 데이비드의 면허증은 그에게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려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라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라니의 가족은 당시 임시체류가 허가된 상황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이민국 경찰의 검문은 여전히 라니의 가족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이때 우연히도 라니의 남편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집에 이발을 하러 가는 바람에 이민국 경찰과의 대치를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민국 경찰은) 마지막으로 내 체류자격을 물어 봤다. 사실 지금 우리 변호사가 그 문제를 해결 중이었는데, 그때 “임시체류허가”(Motion to Stay)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내 임시체류증을 보여주자, 그 사람들은 말하길, 사실 나의 남편을 찾는 게 아니라 예전에 여기 살던 알렉스라는 이름의 사람을 찾는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무서웠다. 만약 그 시간에 남편이 집에 있었다면, 비록 임시체류허가가 있다고 해도 남편이 끌려가서 수감에 채워지거나 또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지 않는다.

위의 라니의 진술에서 살펴보면 라니의 가족이 “임시체류허가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이 이러한 이민국 경찰을 만났다면 그들에게 “끌려가서 수갑이 채워지거나 또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데이비드의 간증에서 “검문에서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라니의 경우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범법자화”되거나 다른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강제 출국이라는 미국에서의 추방 가능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범법자” 또는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겪을지도 모르는 불이익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다.

많은 기존의 연구에서 ‘불법성’의 경험은 근본적으로 ‘공간적’인 경험이 빈번하게 지적되어 왔다. 즉, 불법 입국과 체류는 체류국의 영역에 허가 없이 들어 온 것이며, 이에 따라 체류 국가라는 공간에서의 추방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미등록 노동자들은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숨어 있으려고 하므로 ‘불법성’이란 철저히 공간적인 경험이라는 것이다(De Genova 2002, 2004, 2005; Coutin 2005; Willen 2007; Winders 2007). 하지만, 데이비드의 간증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공간의 경험은 언제나 시간의 경험과 맞물린다. 비자나 노동허가증은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거나 갱신하여야 하며, 이러한 연장이나 갱신은 긴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망명을 신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청에서 인터뷰, 그리고 결과까지의 과정은 기다림의 연속이며, 첫 번째 망명 신청에서 실패하여 재심, 항소까지 할 경우 이러한 기다림의 과정은 더욱 더 길어진다. 이러한 시간의 경계는 이주민들의 불법/합법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낳았고,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미등록 이주민들의 시간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자신의 ‘불법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을 신체적, 공간적, 시간적 경험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은 이러한 체험된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다음 절에서는 특히 이들의 종교 생활과 종교적 담론에 주목하여, 어떻게 종교가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에게 대안적 담론과 공간을 제공하여 이들의 대안적 정체성 형성에 공헌하고 있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4. 대안적 담론으로서의 종교: 도덕성, 소속감, 정체성의 문제

뉴시티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에게 종교생활은 중요한 생활세계의 한부분이다.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의 밀집 거주 지역에는 12개가 넘는 개신교 교회와 하나의 천주교 공동체가 존재하며, 이러한 교회들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일요일마다 모이는 에스닉 엔클레이브(ethnic enclave)가 된다.¹⁰⁾ 이러한 종교 집단은 이주민들 사이의 초국가적 관계형성과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을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역할 한다(Cadge and Ecklund 2007; Levitt 2007).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뉴시티 찬양 교회는 미국의 메노나이트파 교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의 미국 내의 정착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이민자의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교회 활동은 체류국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주민들에게 유대감과 소속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들만의 대안적 공간을 제공한다. 신앙생활은 이주민들의 새로운 생활에의 적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

10) 한편, 뉴시티 내의 인도네시아 무슬림 이주민을 위한 사원은 2009년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들의 대안적인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상징적 자원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코닝(Koning 2011)에 따르면, 많은 수의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1990년대 말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겪고 난 후, 성령의 경험을 중시하는 오순절 기독교(Pentecostal-charismatic Christianity)로 개종하였으며, 이러한 개종을 통하여, 자신들의 불안정한 현실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대안적 공간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뉴시티의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에게 종교는 자신들을 범법자화하려는 미국사회의 시선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도덕성과 인도네시아 이주민들 사이의 유대감의 원천으로 강조된다. 이러한 도덕성과 유대감의 영역으로서의 종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적인 담론에서 빈번히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1945년 인도네시아의 독립 이후 판차실라(Pancasila)라고 불리는 5가지 원칙이 국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다. 이러한 종교적 이념을 통한 국민들의 통합은 인도네시아의 독립 이후 언제나 정치적 담론에서 강조되어 왔고, 미국이라는 초국가적인 상황에서 계속 되었다. 이러한 예는 주미 인도네시아 영사관의 영사와 직원들이 뉴시티에 방문하였던 행사 중에 행해졌던 영사의 연설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거지요. 좋은 의도가 있으면, 그것을 이를 좋은 방법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하면, 신¹¹⁾께서 우리의 꿈을 이를 가장 좋은 방법을 주십니다. [중략] 모든 것을 신께 맡기십시오. 그러니,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11) 이 연설문에서 영사는 신을 가리키는 말로 Allah 또는 Tuha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Allah는 원칙적으로는 이슬람 신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인도네시아의 개신교나 천주교에서도 Allah는 기독교적인 신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Allah를 가장 일반적인 초월적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인 ‘신’으로 번역하기로 하였다.

“서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 서로 알려 주십시오. 나쁜 일, 범죄행위 같은 일을 멀리합시다. 지금까지 미국정부는 우리를 좋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이름을 지킵시다. 우리의 강한 하나 됨으로 신께서는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위의 예는 영사의 연설 중 도입 부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설문에서 신과 종교는 두 가지 의미에서 강조된다. 하나는 “좋은 의도”를 이룰 방법을 찾아줄 초월자로, 둘째는 이주민을 “나쁜” 행위로부터 지키고, 유대를 지킬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로 나타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영사가 말하는 범죄 행위(hal-hal yang kriminal)는 강도, 살인과 같이 폭력을 수반한 범죄를 말하며, 대다수 이주민들의 미등록 체류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주민들의 ‘꿈’인 미국에의 정착이 초월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위의 연설문에서 이주민들의 ‘뜻’, ‘의도’, ‘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 알려주라”는 표현이라든지, 이후 행해진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된 문제¹²⁾ 등에서, 영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함축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한편, 부영사의 연설에서도 역시 신앙 생활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있다.

사실 여기 모인 모든 분이 영웅입니다, 그렇죠? 요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열성적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언제나 진실로 신을 섬기

12)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질의 응답 시간에 아무도 자신의 미국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수라비아에서 왔다는 한 여성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에 있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는 일반적인 질문을 한다. 이에 부영사는 곧바로 미등록 체류의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체류의 자격은 미국의 법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또한 강제 출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영사관 측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영사나 부영사는 뉴시티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과 우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금 영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도네시아의 좋은 이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영사도 역시 신앙의 담론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인의 바람직한 두 가지 자질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다른 하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며, 이 두 가지 자질이 미국 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좋은 이름”을 지키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한편 이러한 종교성의 강조는 이들이 강제 출국 상황에 놓이더라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음의 예는 부영사가 뉴시티의 인도네시아 이주민들과 가진 질의, 응답시간에 언급했던 강제 출국의 상황으로, 특히 다음과 같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특히 이슬람이 종교이신 분들은 좀 두려우시겠지요, 솔랏(sholat: 이슬람식 기도) 다섯 번 기도하는 것이요. 기독교이신 분들 만약 예배보고 싶으시면, 목회자님들이 그 어려운 시기 동안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이처럼 설사 강제 추방의 상황에 놓일지라도 이들의 종교생활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의 불법 체류 사실이 이들의 도덕성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신앙의 힘이 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영사와 부영사의 연설에서 나타나는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의 모습—근면한 노동자와 독실한 신앙인—은 미국 내의 지배적 담론에서 범법자화 되는 외국인 미등록 이주민들의 이미지와는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와 신앙생활에 대한 언급은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이 범법자화 되는 미국 내의 지배 담론과는 달리 그들의 도덕성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대안적 담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교는 이들에게 금전만능주의와 쾌락을 추구하는 미국의 생활에서 이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미국 사회의 지배담

론에서 미등록 이주민은 끊임없이 타자화, 범법자화 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들 이주민들도 자신들의 시각으로 미국 사회에 대한 평가를 끊임 없이 내리곤 한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미국의 물질만능주의 풍토와 쾌락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스테레오 타입과 종교를 통한 극복은 다음 인용될 연극에서 잘 나타난다. 조사 당시 인도네시아 교회 중 한 개신교 교회에서 교회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전통 그림자 연극인 와양(Wayang)의 형식을 이용한 연극을 공연한 적이 있었다. 당시 30대 초반의 목회자가 대본을 썼고, 그 교회의 청년 신도들이 공연을 하였다. 이 연극은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갔 이주해 온 구스 두르라는 이름의 청년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공연 당시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다음은 연극의 도입 부분에 나오는 주인공의 독백이다.

아, 미국에 왔다. “쿨”(cool)한 미국, 돈 많은 미국. 그런데 미국이 뭐 이래? 어딜 가나 인도네시아 사람(Orang Indo)이 이렇게 많지? 사람들이 말하길, 안나 니콜 스미스¹³⁾를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오니까 죽었대? 일을 하고 싶은데, SS(surat SS: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되는데, SS가 뭐야 도대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많이 버는거지. 빌 게이츠를 이길 정도로 [중략] 그런데 일, 밥, 일, 밥... 변화가 없군. 미국도 지루하구나(bosen juga di Amerika nih). 외로워(I feel lonely). 재미있는 걸 찾고 싶어(mau cari yang fun).

위의 대사에서 나타나듯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상상되던’ 미국은 ‘돈 많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매스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유명한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쿨’한 곳이고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의 미국 생활은 “일, 밥, 일, 밥”의 생존을 위한 노동의 반복이라는 단순한 일상이며, 이들은 ‘외롭고’ ‘지루하게’ 된다. 위의 연극에

13) 안나 니콜 스미스(Anna Nicole Smith)는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으로 2007년 2월 초에 사망했다.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극은 2007년 2월 25일 공연되었다.

서 주인공은 결국 친구의 꼬임에 빠져 도박을 즐기며 그동안 모았던 모든 돈을 잃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쳐진다. 물론 이러한 연극이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의 생활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미국의 ‘타락’한 생활에 대한 경계와 종교를 통한 극복이라는 생각은 대다수에게 공유되고 있었다.

한편, 위의 영사의 연설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의 담론에서 신과 종교는 이들의 절대적인 보호자, 나아가 어떠한 공식적 제도나 법적 규율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적 힘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대안적 파워의 근원으로서의 신과 종교에 대한 담론은 뉴시티의 인도네시아 공동체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의 광고란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공고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감사문>¹⁴⁾

위자야(사람 이름)로부터: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2007년에 드디어 제가 이민케이스에서 이겼습니다.

(이 케이스는 1년이 넘게 진행되었고, 수감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주 불리한 경우였습니다).

제 감사를 다음 분들께 드립니다.

1. 크리스 아리요노 목사님
 2. 이민법 담당 존 윌리엄스 변호사와 그 사무실
 3. 크리스틴 인도네시아 교회의 모든 신자들
- “신께서는 결코 당신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뉴시티에서 주간으로 발간되는 무료 지역 신문에서는 이러한 감사문을 매주 거의 2~3개씩 찾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 위의 예문과 유사한

14) 이 감사문은 2007년 7월 뉴시티의 한 지역신문에 실린 공고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공고문에서 언급된 인명과 교회명 때문에 공고문의 출처를 자세히 제공할 수 없음을 밝힌다.

구조를 지닌다. 단지 공고를 올린 사람과, 감사하는 대상의 이름이 달라질 뿐이다. 이러한 감사인사의 구조는, 첫째, 이민신청이 성공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리고, 둘째, 신에게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신부/목사, 이민법 변호사, 교회의 신도들, 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감사 인사를 한다. 인도네시아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공고문은 담당 이민법 법률사무소에 대한 “약간의 광고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는 하나,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관점, 즉, 체류국의 ‘법’도 이길 수 있는 절대적 힘의 근원이라는 점이다(예를 들어, “이 케이스는 1년이 넘게 진행되었고, 수감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주 불리한 케이스였습니다”).

이처럼 종교는 공식적, 법적 영역과 대치되는 초월적 영역을 구성하여, 문제에 대한 대안적 이해와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미국의 ‘타락’한 생활에서 이들 이주민들을 지켜주는 도덕성의 근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등록 체류의 경우, 미국의 법률상으로는 위법행위라고 하더라도, 초월적인 공간에서는 신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영사가 언급했듯이 “좋은 의도”라면 신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며, 위의 감사문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성공적으로 취득(예를 들어, 영주권, 망명자, 취업비자 등의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의 목적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교는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미국의 범법자화에 대한 대응적인 담론으로서 이들의 도덕성의 근거로 작용하며, 동시에 이들에게 영적/초월적인 이주의 동기를 제공한다. 즉, 미등록 이주민들의 ‘어둠의 이민자’로서의 현실은 오히려 신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하는 주요 수단으로 재정의되며, 따라서 종교는 미등록 이주민들의 ‘불법성’에 의미와 정당화를 부여하고 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제로 사용되는 것이다.

5. '주님이 원하신다면':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의 신앙과 정체성

앞에서 종교적 담론은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의 초국적 이주를 초월적인 힘에 의한 것으로 정당화 하고, 이에 따라 '불법성'을 새로운 의미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담론이 일상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과 어떻게 연결되고, 표현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보이기 위하여 보다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의 경험과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절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의 신앙 간증 내러티브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내러티브는 단순히 화자 개인에게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 과정은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 경험을 현재의 상황에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므로 "개인의 내러티브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 동시에 그 경험을 구축"(Ochs and Capps 1996: 20)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내러티브의 분석을 통해서 화자가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구축해 나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Schiffrin 1996, 2009 참조). 따라서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의 내러티브는 이들이 처한 객관적 사회적 조건과 이들의 주관적, 감각적인 '불법성'의 경험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중요한 영역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왜 신앙 간증 내러티브에 주목해야 하는가? 첫째,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류 신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언급하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특히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은 결국 연구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응대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자신의 개인적 주관적인 경험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Bucholtz and Hall 2008 참조). 이와 달리 신앙 간증의 경우는 개개인 신자가 보다 자유롭게 또 즉흥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이야기하므로, 이들의 주관적, 감각적 경험을 보

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Szuchewycz 1994). 실제로 이러한 신앙 간증의 시간이 이들 이주민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토로하는 유일한 자리이기도 했다. 둘째, 이들의 신앙 간증은 단순히 이주민들의 영적/초월적 경험뿐만 아니라, 이들의 세속적, 현실적 욕망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수집된 화교 출신 매니저들의 성령기도는 이들의 세속적 열망, 즉 무슬림이 대다수인 국가 내에서 자신들의 화교/기독교인으로서의 민족적/종교적인 파워를 강화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파워를 유지하고 싶은 바람을 반영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Koning and Dahles 2009; Koning 2011).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뉴시티의 성령기도회의 참여를 통해 발견한 것은 많은 수의 신앙 간증이 자신의 미국 내 체류자격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¹⁵⁾

다음에 분석될 신앙 간증 내러티브는 뉴시티의 인도네시아 천주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령기도 모임에서 기록되었다. 이 모임은 평균 약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신도가 미사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제단이 있는 작은 방에서 기도와 찬양, 신도들의 간증 등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모임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펜테코스탈리즘(Pentecostalism: 오순절 교회)의 부흥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연구자가 참여 관찰한 모임에서는 강한 오순절 교회의 특징적인 요소(예를 들어, 방언의 사용)(Brodwin 2003 참조)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기도 모임 중 신앙 간증은 정해진 규칙이나 순서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해진 의례 절차와 기도문을 따르는 미사 시간과는 상이한 진행과정을 보여 주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두 가지 사례는 연구자가 관찰했던 신앙 간증 중에서도 화자의 체류 자격과 관

15) 총 4번의 성령 기도회를 통해 10명의 신앙 간증을 관찰하였는데, 이들 중 6명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대한 간증을 하였다. 나머지 4가지는 주로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문제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련된 위기 상황과 그것의 극복이라는 전형적인 내러티브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선택되었다. 그 중 하나는 30대 후반의 여성 예니의 간증이며, 다른 하나는 앞에서 이미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데이비드의 간증이다. 이러한 간증의 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불법성’ 경험은 오히려 이들이 ‘천국의 시민’임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언어를 통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초월자의 의도와 가호의 증거로서의 ‘불법성’ 경험

첫 번째로 분석할 내러티브는 예니의 간증이다. 예니는 30대 후반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이주해온 여성이다. 그녀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였다가 노동 허가 없이 뉴시티의 작은 사무실에서 잡무를 도와주는 일을 맡고 있었다. 예니는 당시 인도네시아 성당 근처에서 살면서, 성당의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자였다. 주말이면 항상 천주교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각종 활동, 예를 들어 목주 기도회나 성가대, 구역모임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특히 예니는 성령 기도회의 주요 성원으로, 성령 기도회의 진행을 자주 맡기도 했는데, 이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신앙 간증의 경우 당시 다른 신자들이 간증하기를 주저하자, 진행자로서 자신이 직접 간증을 한 경우였다.

예니의 간증은 자신의 직장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녀가 당시 맡고 있는 일은 한 회사에서 편지를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는 일인데, 편지의 서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조작의 미숙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음은 예니의 신앙 간증의 시작 부분이다.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합니다. 매일 저는 그 날 꼭 보내야 하는 편지들이 있

습니다. 만약에 경우 편지가 돌아와서 그 편지 안에 찍힌 우체국 소인이 제가 보내야 할 날짜와 같지 않으면 야단을 맞기 때문이죠. 그때 제가 편지를 입력하는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퇴근했는데, 마침 그 일이 제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편지는 아주 많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걸 ‘매치’(match)하는 일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야 하는 자료들은 모두 만들어졌고, 편지 서식도 모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사무실에서 일을 안 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거든요, 약 6년이요. [중략] 그리고 그 편지들은 매일 매일 해야 하는 거고, 보스가 알면 안 되잖아요.

예니의 내러티브는 자신의 업무 능력에의 부족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감 결여로부터 시작한다. 그녀의 컴퓨터 조작 미숙에 따라 편지의 서식과 그 내용을 맞추어 출력하지 못하는 상황은 ‘보스’에게 ‘야단을 맞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스가 알면 안 된다’고 표현하며, 예니는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편지의 서식에 맞추어 프린트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한다. 하지만, 위의 간증에도 나타나듯이 당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퇴근’ 한 상황에서 그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그녀는 “아무거나, 이것저것 [컴퓨터 자판을] 눌러보며, ‘어휴, 주님. 큰일 났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라고 혼잣말을 하며, 그저 이것저것 눌러 보았다”고 회상한다. 그리고 자신이 “뭘 누르는지도 몰랐다”고 덧붙인다.

여기서 예니가 경험하는 걱정과 불안은 그녀의 미숙한 컴퓨터 기술이 사람들—특히 보스와 같은 권위적 타자—로 하여금, 현재의 직장, 나아가 미국이라는 공간에 소속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즉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있어서 권위적인 ‘타자’—상상되었든 실제이든 간에—는 자신이 ‘불법’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상기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체류 국가의 권위를 체현하고 있는 권위적인 타자의 상정을 통하여 미등록 이주민들은 일상적으로 ‘불법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다시

이들 이주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스스로를 통제하게 만든다. 여기서 예니의 미숙한 업무 능력과 이에 따른 절망감은 그녀의 체류 신분에 대한 걱정과 체포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다음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건 여기 같지 않아요. 그러니 시간이 더 많았죠. 하지만 여기는 첫째 목적이 돈을 버는 거 같아요. 그러니 그저 돈, 돈, 돈. 그래서 전 가끔 이렇게 말해요. “만약 하느님께서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야. 여기로 옮겨지지 않아도(이주가 허용되지 않아도) 괜찮아. 잡히지만 않으면.” 저는 잡힐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 두려움이 저 혼자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체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단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니는 “저는 잡힐까봐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두려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두려움이 혼자만의 것은 아니며, ‘저와 같은 체류 신분’(status yang sama dengan saya)이라고 지칭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니의 신앙 간증 내러티브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예니의 현재 상황에 대한 결과론적인 해석이다.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예니는 위의 상황에서 “그냥 이것저것을 놀러” 마침내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된다. 하지만 어떻게 하여 그러한 위기가 해결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와 위기의 극복은 결국 예니에게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하느님께서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야”라는 독백에서 나

타나듯이 예니의 미숙한 업무 능력은 오히려 ‘나’에 대한 초월자의 의도와 가호를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된다.

2) 초월적 존재로의 귀속과 주체성의 형성

두 번째로 살펴 볼 내러티브는 데이비드의 간증이다. 데이비드도 예니와 마찬가지로 천주교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신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성령기도회에도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는 편이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논문에서 분석할 데이비드의 간증은 자신의 면허증 취득에 관련된 에피소드에 대한 것이다. 앞서 예니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비드의 간증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체류 국가의 권위의 체현으로서의 ‘타자’는 면허 시험장의 직원이다.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치관계는 곧 만료하는 신분증을 가진 체류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외국인인 ‘나’와 면허증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의 대치로 구성된다. 여기서 ‘나’와 타자의 상호작용은 ‘나’를 권력관계에서 하위로 위치지우며, 즉각적으로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신앙 간증에서 그의 두려움은 권위적인 ‘타자’의 상위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초월자에의 상정으로 극복된다.

… 그리고 나서 대기실로 가서, 신분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나 봤어요. 세 명이 있는 걸 봤어요. 그 중 무서워 보이는, 좀 나이 많고, 두꺼운 안경을 쓴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쪽에 가는 사람은 모두 찢찢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두 젊은 직원은 좀 쉬워 보였죠. 그리고 나서, 번호표를 뽑고 거기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죠. “주님 가능하다면 좀 더 젊은 직원으로 부탁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주님 뭐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보니 그 늙은, 두꺼운 안경을 쓴 그 직원에게 가야되는 거예요. (웃음) 하지만 앞으로 나가면서 생각했어요. “오 그래, 그래. 마지막 결정은 저 사람들에게 달린게 아니야. 만약 주님이 원하신다면 누가 저기 앉아 있던 반드시 통과할 수 있어.”

위에서 묘사되고 있듯이 권위적인 타자의 모습 앞에서 체류 신분은 불안정한 ‘나’는 두려움에 떠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권위적인 타자(여기서는 면허관리국 직원)와의 관계에서 항상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화자의 주체적 행위는 언제나 화자인 ‘나’가 초월적 존재의 권력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위의 내러티브에서 나타나는 기도 형식의 독백은 초월적 존재에의 귀속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마지막 결정은 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고 선언하며, 초월적인 절대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자신감과 용기를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자신감과 용기는 데이비드가 자신의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타협하려는 다음 장면에서 극대화된다. 다음 장면에서 데이비드는 가장 최근의 신분증을 묻는 면허시험장의 직원에게 이민국에서 보내온 편지를 보여주며, 마지막 면허증 발급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다.

(편지를 주고 나서) 내가 말했습니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거기 이민국 번호가 있습니다. 전화하세요. 저도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다시 한 번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렇게 편지를 받아들고는 그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확신에 차서 말했죠. “(유효기간) 4년을 요청할 수는 없나요?” 직원은 답을 안했죠. 아주 심각한 얼굴로 두꺼운 안경을 끼고 말이죠. (내가 덧붙이길) “1년도 괜찮아요.” (웃음) 그리고 나서 그 직원이 (운전면허증을) 돌려주었는데, 2010년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로 지금까지도요. 신분증이 살아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많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데이비드의 신앙 간증은 2006년 12월에 행해졌으므로, 위의 내러티브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면허증의 취득을 통해서 앞으로 4년간 유효한 신분증을 취득한 셈이다. 앞서 말했듯이 ‘불법성’이 시간의 경계와 통제로 경험된다면, 위의 내러티브는 데이비드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간의 경계를 연장하는 타협의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비드의 주체성과 적극성은 전형적인 미등록 이주민들의 모습—부정적 감각 경험(걱정, 공포, 두려움)과 이로 인한 수동적 행위(은닉, 회피)—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즉 데이비드는 여기서 수동적 경험자이지만, 동시에 능동적 행위자이기도 하다. 여기서 데이비드는 권위적인 타자와의 대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타협하여 원하는 바를 쟁취해 내는 승리자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데이비드의 간증은 당시 청중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간증을 듣는 다른 신도들은 데이비드의 시련과 위기가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박수를 치고, ‘아멘’을 외치며 함께 환호했다. 데이비드는 특히 훌륭한 이야기 솜씨로 자신과 권위적 타자의 대치와 그에 따른 초월자의 승리를 극대화하여 청중들의 호응을 끌어내는데 더욱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예니와 데이비드의 간증 내러티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개인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불법성’ 경험은 체류 국가의 권위를 체현하여 언제든지 이들의 ‘불법성’을 상기시킬 수 있는(상상의 또는 실제의) 권위적인 타자와의 대치를 통하여 구성되고 전달됨을 알 수 있다. 두 가지의 내러티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의 구성은 대치-위기-절정-극복-평가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신앙 간증의 형식적인 구성 방식은 다른 신앙 간증이나 성령기도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Brodwin 2003; Koning 2011 참조). 하지만 여기에서 ‘대치’는 항상 미국의 (상상된) 권위적 타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그 극복은 경험자의 ‘불법성’의 극복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내러티브에서 묘사되는 ‘나’의 모습은 철저히 수동적인 ‘경험자’이지만, 동시에 초월자에게 전지전능한 보호를 요구하는 능동적인 행위자이기도 하다. 데이비드의 간증이 “만약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무것도 불가능할 것이 없다”로 끝맺는 것처럼, 예니의 간증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방법은 모르지만 여기 있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끝맺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간증의 사례에서도 자신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는 초월자의 의도인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는 오히려 초월자의 “원하는 바”(kehendak Tuhan)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정의 되는 것이다.

앞서 인도네시아 영사의 연설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신이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이러한 인도네시아 천주교 공동체 내의 신앙 간증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들 이주민들이 계속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절대자의 의도와 원하는 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들이 겪는 위기의 순간이나 두려움의 경험은 이들의 체류 자격의 합법성에 따른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자의 사랑과 보호를 경험하는 기회로 재정의 된다. 따라서 종교적인 의미체계에서 살펴보면, 화자인 ‘나’의 ‘불법성’ 경험은 오히려 ‘나’에 대한 초월자의 ‘의도’ 와 ‘가호’를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이들이 “천국의 시민”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6. 나가는 글

이 논문은 뉴시티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의 체험된 경험으로서의 ‘불법성’, 즉 자신의 불안정한 체류자격에서 기인하는 주관적 생활 세계와 감각적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의 특수한 신체적, 공간적, 시간적 경험의 구성을 분석하였다. 앞서 많은 연구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9/11 이후 미국 내의 격양된 ‘국가 안전’의 담론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일상적인 경계로 변형되어, 국가 간의 경계의 문제는 지역 내의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로, 또 이주민들 스스로의 내재화된 경계와 통제로 다시 작용하게 되었다(Winders

2007; Willen 2007). 이러한 경계의 문제는 인종적 타자로서의 이들의 신체적 경험이나, 건강의 문제, 또는 특수한 공간에의 인식과 시간적인 경계의 문제로 체험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주위를 경계하는 특수한 생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자신들만의 대안적인 공간과 담론을 구성하여 자신의 새로운 삶과 위치를 평가하고 재조정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초국가적 이주에 대한 이유와 정당성을 모색한다. 이 글에서는 특히 종교의 역할에 주목하여, 신앙이나 종교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에게 대안적인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보다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들의 신앙 간증 내러티브를 분석하여 이들의 객관적인 사회조건으로서의 ‘불법성’과 주관적, 감각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이 어떻게 종교의 영역에서 교차하고 있는지 살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일상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은 이들의 체류신분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의 두려움, 공포,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의 경험은, 자신의 법적 체류 신분에 대한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님을 밝혔다. 반대로 이들의 종교적 의미체계에서는 이러한 ‘불법성’ 경험이 오히려 이들을 ‘천국의 시민’으로 공인됨을 확신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들은 초월자와 종교의 담론을 이용하여 자신의 초국가적인 이주를 영적인 이동성—전지전능한 초월자의 숨겨진 의도를 위해 계획된 이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의 주관적, 감각적인 체험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생활이 ‘불안’, ‘공포’, ‘은밀함’으로 점철되는 단선적이고 일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개척하려는 보다 역동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멕시코 미등록 노동자들의 삶을 연구한 사베즈(Chavez 1994)는 이들에

대한 정형화된 관념, 즉 언제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임시체류자’의 이미지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미등록 노동자들은 자신들만의 “사회관계, 문화적 정서, 경제적 유대”(56)를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려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자신들만의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새로운 사회에서의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으려 함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는 단순히 이들의 현실세계에서 형성되는 사회 경제적 관계나 정서적 유대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에서도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영적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은 이들의 일상적 ‘불법성’의 경함마저도 자신의 영적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과정으로 재해석 하고 있는 것이다.

논문접수일: 2012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 2012년 5월 24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7일

참고문헌

김민정

2011 “필리핀 노동 이주 여성의 일과 한국생활: 미등록 장기 체류의 역설”, 『한국문화인류학』 44(2): 313-358.

김현미

2008 “방문 취업 재중 동포의 일 경험과 생활세계”, 『한국문화인류학』 42(2): 35-75.

노고운

2001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한국 내 조선족 노동자의 삶과 적응전략,”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유명기

-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노동문제논집』 13: 69-98.
1999 “외국인, 외국인노동자, 열린사회를 향한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당대비평』 9: 152-172.
2002 “외국인 노동자,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미래”, 『당대비평』 18: 12-35.

이선화

- 2006 “두려움과 공존 사이에서: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옥정

- 1994 “국내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적응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현정

- 2001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7(2): 63-105.

정성신

- 201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서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로: MWTV 미디어 활동가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8(1): 35-76.

한건수

- 2003 “타자 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9(2): 157-193.

함한희

- 1995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 『한국문화인류학』 28: 199-221.

Baldwin-Edwards, Martin

- 2008 “Towards a Theory of Illegal Migration: Historical and Structural Components,” *Third World Quarterly* 29(7): 1449 - 59.

Brodwin, Paul

- 2003 “Pentecostalism in Translation: Religion and the Production of

- Community in the Haitian Diaspora,” *American Ethnologist* 30(1): 85-101.
- Bucholtz, Mary & Kira Hall
 2008 “All of the Above: New Coalitions in Sociocultural Linguistics,”
Journal of Sociolinguistics 12(4): 401-31.
- Cadge, Wendy and Ealine H. Ecklund
 2007 “Immigration and Relig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
 359-79.
- Coutin, Susan B.
 2005 “Being En Route,” *American Anthropologist* 107(2): 195-206.
- Chavez, Leo R.
 1994 “The Power of the Imagined Community: The Settlement of
 Undocumented Mexicans and Central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Anthropologist* 96(1): 52-73.
 2012 “Undocumented Immigrants and their Use of Medical Services
 in Orange County, California,” *Social Science & Medicine*, In
 Press.
- Coleman, Mathew
 2007 “Immigration Geopolitics beyond the Mexico-US Border,”
Antipode 39: 54-76.
- De Genova, Nicholas
 2002 “Migrant Illegality and Deportability in Everyday Lif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1(1): 419-447.
 2004 “The Legal Production of Mexican/Migrant Illegality,” *Latino
 Studies* 2: 160-185.
 2005 *Working the Boundaries: Race, Space, and “Illegality” in
 Mexican Chicago*,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Freedman, Amy
 2003 “Political Institutions and Ethnic Chinese Identity in Indonesia,”
Asian Ethnicity 4(3): 439-52.

Hiemstra, Nancy

2010 “Immigrant ‘Illegality’ as Neoliberal Governmentality in Leadville, Colorado,” *Antipode* 42(1): 74-102.

Hoeffler, Michael, Nancy Rytina, and Bryan C. Baker.

2008 *Estimates of the Unauthorized Immigrant Population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January 2007*.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Khosravi, Shahram

2010 “An Ethnography of Migrant ‘Illegality’ in Sweden: Included yet Excluded?,”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6(1): 95-116.

Koning, Juliette

2011 “Business, Belief and Belonging: Chinese Indonesians and Conversion to Charismatic Christianity,” in Juliette Koning and Peter Post, eds., *Chinese Indonesians and Regime Change: Alternative Perspectives*, Boston: Brill. pp. 23-46.

Koning, Juliette and Dahles, Heidi

2009 “Spiritual Power: Ethnic Chinese Managers and the Rise of Charismatic Christianity in Southeast Asia,” *Copenhagen Journal of Asian Studies* 27(1): 5-37.

Levitt, Peggy

2007 *God Needs No Passport: Immigrants and the Changing American Religious Landscape*, New York: The New Press.

Levitt, Peggy and B. Nadya Jaworsky

2007 “Transnational Migration Studies: Past Developments and Future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 129-56.

Ochs, Elinor and Lisa Capps

1996 “Narrating the Self,”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5: 19-43.

Purdey, Jemma

2006 *Anti-Chinese Violence in Indonesia 1996-1999*,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Quesada, James

2012 “Commentary: Special Issue Part II: Illegalization and Embodied Vulnerability in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In Press.

Schiffrin, Deborah

1996 “Narrative as self-portrait: Sociolinguistic Constructions of Identity,” *Language in Society* 25: 167-203.

2009 “Crossing Boundaries: the Nexus of Time, Space, Person, and Place in Narrative,” *Language in Society* 38: 421-445.

Setiyawan, Dahlia

2005 “*Unity in Diversity*”: *Identity Development and Community Building Among Indonesian Immigrants in Philadelphia*. Unpublished M.A. thesis, University of Pennsylvania.

Szuchewycz, Bohdan

1994 “Evidentiality in Ritual Discourse: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ligious Meaning,” *Language in Society* 23: 389-410.

Willen, Sarah

2007 “Toward a Critical Phenomenology of ‘Illegality’: State Power, Criminalization, and Abjectivity among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Tel Aviv, Israel,” *International Migration* 45(3): 8-38.

2012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Migration, ‘Illegality,’ and Health: Mapping Embodied Vulnerability and Debating Health-Related Deservingness,” *Social Science & Medicine*, In Press.

Winders, Jamie

2007 “Bringing Back the (B)order: Post 9/11 Politics of Immigration, Borders, and Belonging in the Contemporary US South,” *Antipode* 39(5): 920-42.

〈Key concepts〉: illegality, undocumented migrants, lived-experience, religion, identity, Indonesia

“Unwelcomed Citizens of Heaven”:

‘Illegality’ as Lived-Experience among Indonesian Undocumented Migrants in the U.S.

Kang, Yoonhee*

This paper explores how Indonesian undocumented migrants in an East Coast city of the United States experience and express their ‘illegality’ due to their unauthorized or not-yet-authorized movement. More specifically, it explores ‘illegality’ as a phenomenological mode of ‘being-in-the world,’ by focusing on Indonesian migrants’ embodied and subjective daily experiences. My analysis of the Indonesian migrants’ daily experiences of ‘illegality’ reveals how their macro-level legal and social conditions intersect with their individual and micro-level daily lives through their embodied and subjective experience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ominant discourses in the United States that racially ‘other’ and ‘criminaliz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 Indonesian migrants experience their unwelcomed presence in the host country through 1) their racial differences and health concerns, 2) subjective experiences of divided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pace between ‘dangerous’ and ‘safe’ places, 3) experiences of timely borders and limits set by the host country. Of particular interest are the roles of religion and religious discourses in mediating between the lived-experience of ‘illegality’ and their new identities in the host country. By examining two testimonies narrated by Indonesian Catholics during their charismatic prayer sessions, this paper argues that their lived-experiences of ‘illegality’ are discursively constructed through unexpected encounters between “I” and authoritative “others” who embody the authoritative institution of the host country. Yet at the same time their language of religion and faith describes the migrants’ fear and anxiety as being overcome by their belief in God and His protection. Therefore, their unwelcomed presence in the new land as unauthorized guest workers is translated into a journey that God plans according to His unknown intentions. In this way, the experience of ‘illegality’ reveals the migrants’ being “citizens of heaven,” a member of an imagined spiritual community. In this process, the very experience of ‘illegality’ in turn provides a symbolic resource by which the Indonesian migrants actively construct and make sense of their new life in the host country.

